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47 발의연월일: 2021. 11. 11.

발 의 자:윤재갑·김형동·문진석

박덕흠 • 서삼석 • 설 훈

신정훈 · 김승남 · 이개호

이상헌 • 이용호 • 전용기

주철현 · 최인호 · 홍문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의 지

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재기를 지원하여 양식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를 "종묘폐기비용, 시설 철거비 및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으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양식업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 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제8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	
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u>종</u>	<u>중</u>
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	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및 어
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	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
다.	<u>실액</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
	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
	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양식업 창업지원을 신청
	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
	<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
	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